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1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전파감시(Radio Spectrum Monitoring)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
- 국내·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2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무선국 허가·검사
- 방송국 검사
-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
-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방송편성비율 확인
-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

4 전파 이용 촉진

-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 전파혼신 조사
- TV 수신환경 조사
-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
- 위성 전파환경 조사

5 국제 교류 협력

-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
- 국제 표준화 활동
-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6 전파 교육 및 연구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지켜줄게!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 emsit.go.kr

민원상담 : 080-700-0074
02-340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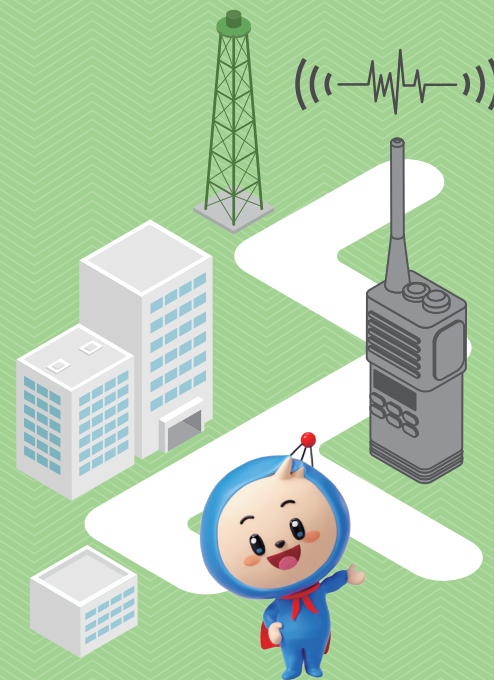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00
-서울북부사무소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31-849-5800
-여의도지역사무소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704호	02-761-284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광주지역사무소	(61945) 광주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	062-651-2604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원주지역사무소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033-660-2974
-속초지역사무소	(24869)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6호	033-633-2961
대전전파관리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00
-당진사무소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도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제주지역사무소	(63220) 제주도 청사로 59, 244호	064-728-6501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crms.go.kr

대한민국 전파·방송통신의 중심!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 허가·신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이무선국은 크게 휴대용과 고정용으로 구분됩니다.

휴대용 간이무선국

개념 : 휴대용 간이무선국이란, 간단한 업무 연락용으로 휴대하여 들고 다니며 통신을 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입니다.

무선국 검사 :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 검사가 면제됩니다.

고정용 간이무선국

개념 : 고정용 간이무선국이란, 간단한 업무 연락용으로서 휴대는 하지 않고, 일정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이며, 마을 공지사향 안내용, 차량용 등이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 :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무선국의 개설 등 안내

간이무선국의 개설 및 유효기간

휴대용 :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의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별도 갱신(재허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정용 :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의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허가 기간 중에 허가갱신(재허가)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 허가 대상 무선국은 면허세 부과 대상으로 연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간이무선국 재허가, 전파사용료 안내

간이무선국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만약 재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으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휴대용을 제외한 고정용 간이무선국
- 허가 유효기간 : 5년
- 만료일 : 6월 30일
- 신청기간 : 만료일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 (3.1.~4.30.)

※ (참고) 만료일 지정은 허가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월 30일에 종료되도록 시행

전파사용료

휴대용 및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1국당 분기별 3천원의 전파 사용료가 부과되며, 일시납(1년 : 4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전파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 발생 및 행정처분 (허가·신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휴지 및 폐지

휴지 :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1회 신청 시 최대 1년 휴지가 가능하며, 휴지 신청이 없으면, 사용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폐지 :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아날로그의 경우, 무선국 폐지 시 디지털 전환정책에 따라 재신청 불가

기타 유의사항 안내

디지털 전환정책

'19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 신고 및 허가가 제한됩니다.

※ (참고) 기존 신고·허가된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에 대해서는 기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되며, 허가 갱신(재허가) 및 지위승계 또한 가능

부관사항

부관사항이란, 법령에서 정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 부관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구매 무선설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1대만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등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국내 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허가 및 신고 후 운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전 관련 기술기준 확인 필요)

간이무선국 허가·신고 상담 및 신청

☎ 080-700-0074(무료)

